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193호(2023.10.25.) 및 제2024-57호(2024.3.28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4월 24일  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.

별표1의 일부를 별지2~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.

별표1의 약제 중 별지6~8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.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고시 제2023-193호, 2023.10.25.)  
“별지5”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의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.

| 구분  | 제품코드      | 제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업체명     | 개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별지5 | 670800180 |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5밀리그램(미세올란자핀)_(5mg/1정)   | 한국릴리(유) |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<br>(~2024.10.31.까지) |
|     | 670800190 |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10밀리그램(미세올란자핀)_(10mg/1정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: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
2.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5년 4월 1일
3.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5년 5월 1일
2.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6년 5월 1일

제2조(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'별지6' 및 '별지8'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.